

출입국관리법

[시행 2009. 6.20] [법을 제9140 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 6 장 강제퇴거등

제 1 절 강제퇴거의 대상자

제 46 조 (강제퇴거의 대상자) ①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. <개정 1993.12.10, 1996.12.12, 2001.12.29, 2005.3.24>

1. 제 7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
1 의 2.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

2. 제 11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

3. 제 12 조제 1 항·제 2 항 또는 제 12 조의 2 의 규정에 위반한 자

4. 제 1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

5. 제 14 조제 1 항, 제 15 조제 1 항·제 16 조제 1 항 또는 제 16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

6. 제 14 조제 3 항, 제 15 조제 2 항·제 16 조제 2 항 또는 제 16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

7. 제 17 조제 1 항·제 2 항, 제 18 조, 제 20 조, 제 21 조, 제 23 조, 제 24 조 또는 제 25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
8.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
9. 제 28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

10. 제 31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
11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

12. 그 밖에 제 1 호 내지 제 11 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

②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2.12.5>

1. 형법 제 2 편 제 1 장 내란의 죄 또는 제 2 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

2. 5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

3. 제 12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

제 2 절 조사

제 47 조 (조사)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(이하 "용의자"라 한다)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2.5>

제 48 조 (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.

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

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⑤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,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⑥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⑦진술중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49 조 (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②제 48 조제 2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 50 조 (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)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3 절 보호

제 51 조 (보호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·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2.5>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·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2.5>

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 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,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.

제 52 조 (보호기간 및 보호장소) ①보호기간은 10 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 ·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 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②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·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.

제 53 조 (보호명령서의 집행)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.

제 54 조 (보호의 통지)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 · 배우자 · 직계친족 · 형제자매 · 가족 · 변호인(이하 "법정대리인등"이라 한다)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 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 · 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2.29>

제 55 조 (보호에 대한 이의신청) ①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 ·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법무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,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된 자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.

③법무부장관은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제 56 조 (외국인의 일시보호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2.12>

1. 제 12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

2.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
3. 제 6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
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교통편의 미확보,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 시간내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 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1996.12.12>

제 56 조의 2 (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) ①사무소장 ·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천재 · 지변 ·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제 5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장소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자(이하 "피보호자"라 한다)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.

②사무소장 ·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 56 조의 3 (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)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, 국적 · 성별 · 종교 ·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.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 56 조의 4 (강제력의 행사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,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.

1.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

2.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

3.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

4.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

5.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,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(유형력)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· 가스분사용총 · 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.

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구(계구)를 사용할 수 있다.

1. 수갑

2. 포승

3. 안면보호구

4.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(계호)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
⑤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 56 조의 5 (신체 등의 검사)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·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피보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. 다만,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 56 조의 6 (면회 등) ①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·서신왕래·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·건강·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·서신왕래·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 56 조의 7 (안전대책) ①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·운영되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 57 조 (피보호자의 처우)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,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·급양·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 4 절 심사 및 이의신청

제 58 조 (심사결정)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2.5>

제 59 조 (심사후의 절차) ①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,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2.5>

②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2.5>

③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제 60 조 (이의신청)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

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,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⑤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.

제 61 조 (체류허가의 특례) ① 법무부장관은 제 6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 5 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

제 62 조 (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)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.

②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제 64 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.

제 63 조 (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) ①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·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.

②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.

제 64 조 (송환국)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.

1.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
2. 출생지가 있는 국가
3.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
4.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

③ 난민에 대하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난민협약 제 3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1993.12.10>

제 6 절 보호의 일시해제

제 65 조 (보호의일시해제) ①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,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, 해제요청사유,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 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66 조 (보호일시해제의 취소) ①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7 절 출국권고등

제 67 조 (출국권고)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제 17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

2.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 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.

제 68 조 (출국명령) ①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1993.12.10, 1996.12.12, 2001.12.29, 2002.12.5>

1.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

2. 제 67 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3. 제 8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

3 의 2. 제 100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4. 제 10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②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선박등의 검색

제 69 조 (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) ①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.

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74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항공기의 불시착,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.

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승무원 및 승객의 출입국적격여부 또는 이선여부
2.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출국을 꾀하는 자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
3.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

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중인 승무원·승객 기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.

⑦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 시간 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.

제 70 조 (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)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·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(이하 "내항자격선박등"이라 한다)이 불의의 사고·항해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에 기항한 경우에는 그 후 입항한 때에 제 7 장 및 제 8 장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항검색을 받아야 한다.

제 71 조 (출입국의 정지등)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 6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의 정지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 4 조·제 11 조 또는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.

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 1 항, 제 4 조 또는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의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.

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대한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출항의 일시정지·회항명령 또는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⑥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항의 일시정지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.

제 72 조 (승선허가)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

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자가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 1 항과 같다.

8 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

제 73 조 (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<개정 2005.3.24>)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24>

1.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·상륙방지
2. 유효한 여권(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)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
3.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
4.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규정된 입국·상륙·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
5. 이 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
6.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의 무단출입금지
7. 선박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·하선방지
8.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

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운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수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3.24>

1. 제 7 조제 1 항·제 7 조의 2 또는 제 12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
2.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사업무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. <신설 2005.3.24>

1. 국적 및 주소
2.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
3. 여행경로 및 여행사
4.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
5. 수하물
6.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방법

④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한다. <신설 2005.3.24>

⑤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<신설 2005.3.24>

⑥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5.3.24>

[전문개정 1996.12.12]

제 74 조 (사전통보의 의무)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항공기의 불시착,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

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75 조 (보고의 의무)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24>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05.3.24>

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5.3.24>

④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(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)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24>

⑤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6 조 (송환의 의무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뒀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2.5>

1. 제 7 조제 1 항 내지 제 4 항 또는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
2.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
3. 제 12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
4.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자
5. 제 46 조제 1 항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